의안번호	2211160
의 뢰 인	김태호 의원
회 답 일	2025.6.23.
추계번호	25E314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)	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: (현행)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 100/110, 10만원 초과 2,00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15% 적용(단,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30%) → (개정안) 고향사랑 기부금 2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 100/110, 2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15%, 1,000만원 초과 2,00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30% 적용(단,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2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 100/110, 20만원 초과 2,00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30% 적용)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(안 제58조)

○ 현재는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, 10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시에는 15%(단,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30%)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, 개정안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, 기부금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5%에서 30%로 인상함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(단,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2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,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30%)

❑ 이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개별 납세자의 기부 증가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

○ 2024년 고향사랑 기부금액은 약 879.3억원이며, 총 기부 건수 77.4만건의 91.7%(70.9만건)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액인 10만원을 기부하고 있어, 세액공제 한도 인상시 기부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나 이를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

- 참고로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액은 약 650.6억원이며, 총 기부건수(52.6만건)의 83.9%(44.1만건)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액인 10만원을 기부함

[표 1]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금액별 건수

(단위: 건, %)

구 분	합계	1만원 미만	1만~10만 미만	10만원	10만~100만 미만	100만~500만 미만	500만원
24년 건수	773,711	9,033	40,984	709,296	9,245	3,709	1,444
비율(%)	100	1.17	5.30	91.67	1.19	0.48	0.19
23년 건수	526,305	39,572	29,627	441,291	8,882	4,881	2,052
비율(%)	100	7.52	5.63	83.85	1.69	0.93	0.39

○ 참고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향액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2025.1.1.부터 연간 500만원에서 2,000만원으로 상향 조정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강민지	박연서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민지	02-6788-4746	min1231@assembly.go.kr